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2025년도 투명성 보고서

2026. 1.

(주)마케팅이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 (투명성보고서 제출의무 등)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1월 30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5년도 투명성보고서

1. 일반현황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주) 마케팅이즈
대표자	김정환
정보통신 주요서비스 / 3개월 일일평균이용자	인터넷개인방송/ 약 5천명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연평균 매출액	약 15억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영업, 김정환 대표

2.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 뽕티비는 팝콘티비 연동으로 본사인 더이엔엠에서 검열 및 모니터링 진행되지만 뽕티비 자체에서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불법촬영물등 유통신고 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부터 신고 또는 삭제 요청서 양식을 받을 수 있고
신고접수를 받을 경우 담당자가 확인하여 본사에 접수하여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에 대한 처벌 조항과
사이트 규정을 홈페이지 공지/팝업을 통하여 고지하고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해 홍보물, 메인배너 노출, 팝업, 별도 페이지 마련 등 추가적인 방안을 계획하여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고객센터 / TEL : 02-6104-5828 / E-Mail : mannerpyj88@nate.com

※ URL : <https://www.bbongtv.co.kr/customer/video-report>

[고객센터](#) > [불법촬영물 등 유통신고](#)

[공지사항](#)
[문의하기](#)
[제안하기](#)
[방송 및 장애신고](#)
[불법촬영물 등 유통신고](#)

불법촬영물이란?

- 불법성 게시물의 일종으로,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제재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의 게시물을 말합니다.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 제 2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다운로드 후 1:1문의하기에 압축파일을 첨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비회원일 경우 angelguy1@nate.com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물

-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

허위영상물

- ① 유통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
-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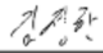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 성적 행위("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

① 신고/삭제요청 시 각 항목 중 기재되지 않은 항목이 있거나, 대상이 된 불법촬영물등이 특정되지 않아 검토가 어려운 경우,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신고-삭제요청하신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 요청서 다운받기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내부결재 〉

결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담당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2025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마케팅이즈 주식회사

2) 불법촬영물등 신고기능 마련

○ 신고기능 마련

- 온라인 신고 페이지 : <https://www.bbongtv.co.kr/customer/video-report>

· PC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고객센터 > 불법촬영물 등 유통신고

공지사항

문의하기

제안하기

방송 및 장애신고

불법촬영물 등 유통신고

불법촬영물이란?

- 불법성 게시물의 일종으로,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제적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의 게시물을 말합니다.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식제요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 제 2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식제요청서"를 다운로드 후 1:1문의하기에 압축파일을 첨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비회원일 경우 angelguy1@nate.com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물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

허위영상물

① 유통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 성적 행위("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

① 신고/식제요청 시 각 항목 중 기재되지 않은 항목이 있거나, 대상이 된 불법촬영물등이 특정되지 않아 검토가 어려운 경우,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신고-식제요청하신 내용에 대한 보관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식제 요청서 다운받기

· MOBILE

○ 신고처리 전담부서 운영

- 일반 문의와 같이 불법촬영물 유통신고 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받고있습니다.

· 실시간으로 방송신고조치로 확인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송신고 조회

파트너 **롯데비** 기간설정 **2025-12-01** ~ **2025-12-31**

검색 ID

☒전체 ☐신고자 ☐신고대상

ID

방송자:

- 검색어 노출 제한

· PC



· MOBILE

4)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필터링 적용

순번	서비스명	필터링 적용	적용 기술	미적용 사유
1		무		

5)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 사전경고 조치 시행



○ 로그기록 보관

- 가입시 ip, 접속시간, 형태등 로그기록 저장 및 보관되고 있습니다.

6) 기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

○ 로그인시 청소년보호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창 되어있습니다.



뽕티비 청소년보호정책

뽕티비는 청소년들이 유해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인증 장치 및 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 정책 수립 및 시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뽕티비는 만19세 이상의 성인만 방송이 가능합니다.
2. 뽕티비는 아주 작은 욕설이나 음주, 흡연도 성인 콘텐츠로 분류되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3. 뽕티비의 모든 회원은 본인 인증된 회원이며 청소년의 경우 성인컨텐츠를 엄격하게 차단하여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4. 뽕티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시행 및 준수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불법유해정보유통 근절을 위하여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정책 보러가기

☒ 1주일간 보지않기

확인

3.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2항에 따른 별지서식의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삭제요청 건수 없음

〈 신고삭제요청 및 처리결과 통계 〉

※ 대상기간 : '25.1.1. ~ 12.31.(신고접수 기준)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신고접수	신고·삭제 요청인	피해자등	-	-	-	-	-	-	-	-	-	-	-	-	-
		기관·단체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신고사유	성적 불법촬영물	-	-	-	-	-	-	-	-	-	-	-	-	-
		성적 허위영상물	-	-	-	-	-	-	-	-	-	-	-	-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	-	-	-	-	-	-	-	-	-	-	-
처리 결과	삭제·접속차단		-	-	-	-	-	-	-	-	-	-	-	-	-
	방심위 심의요청	삭제·접속차 단	-	-	-	-	-	-	-	-	-	-	-	-	-
		각하·해당없 음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비고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

○ 관련 규정

- 불법촬영물 신고 페이지를 통해 신고또는 삭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받고 있습니다.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Q

[고객센터](#) > [불법촬영물 등 유통신고](#)

공지사항

문의하기

제안하기

방송 및 장애신고

불법촬영물 등 유통신고

불법촬영물이란?

- 불법성 게시물의 일종으로,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제각각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의 게시물을 말합니다.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 제 2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다운로드 후 1:1문의하기에 압축파일을 첨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비회원일 경우 angelguy1@nate.com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물

-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

허위영상물

- ① 유통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
-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고 등 성적 행위("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

① 신고/삭제요청 시 각 항목 중 기재되지 않은 항목이 있거나, 대상이 된 불법촬영물등이 특정되지 않아 검토가 어려운 경우,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신고·삭제요청하신 내용에 대한 보상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 요청서 다운받기

○ 신고 삭제요청 처리 프로세스

- 불법촬영물등 유통신고 페이지를 통해 양식을 받아 담당자에게 메일로 전달받고 신고접수된 내용은 본사(더이앤엠)으로 처리 요청드립니다.

○ 기타 운영관련 사항

- 팽티비는 팍콘티비 연동으로 영상 송출만 받기 때문에 모니터링 진행은 팍콘티비(더이앤엠)에서 진행하며 이에 따른 더이앤엠 정책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예외적인 신고접수를 받을 경우 담당자가 확인하여 본사에 접수하여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5.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구분	성명	부서	직책	지정일
정	김정환	영업	대표	2026-01-29
부	박용진	운영,마케팅	팀장	2026-01-29

6.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교육

구분	교육일 (수료일)	교육명	참석자	시간	교육기관
법정교육	2025-10-30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김기환	2	방미통위
법정교육	2025-10-3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박용진	2	방미통위

발급번호 : 2025-il-018-0001

교육 수료증

성명 : 김기환

소속 : (주)마케팅이즈

교육과정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교육기간 : 2025. 10. 30. ~ 2025. 10. 31.

위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5. 10. 3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급번호 : 2025-ll-018-0002

교 육 수 료 증

성 명 : 박용진

소 속 : (주)마케팅이즈

교육과정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교육기간 : 2025. 10. 31. ~ 2025. 11. 03.

위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5. 11. 0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